DMA서비스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메릴린치 인터내셔날 엘엘씨 증권 서울지점**(이하 "회사")의 DMA(Direct Market Access)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DMA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 간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등)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DMA"는 고객이 고객 자신의 주문관리시스템(OMS, Order Management System)을 이용하여 회사의 주문전달시스템을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상의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금융투자상품시장"이라 한다)에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주문전달방식을 의미한다. HTS(Home Trading System)는 고객이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주문관리시스템(HTS)을 이용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주문 전달 및 체결, 결제 및 계좌정보 조회, 자금이체, 시장정보, 뉴스 등 거래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DMA와 구별된다.
2. "DMA주문"은 고객이 DMA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직접 전달한 매도 및 매수 등 신규, 정정 및 취소 주문을 의미한다.
3. "DMA서비스"는 회사가 고객이 DMA방식으로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회사 또는 제3자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기기 등의 전자적 장비에 의하여 제공하는 비대면 주문전달서비스를 의미한다.
4. "고객"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회사의 DMA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투자업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규정(이하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문의 접수)

① 본 약관에 의한 DMA주문은 고객이 회사의 DMA 서비스를 통해 DMA주문을 내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지 않으면 전자통신방법에 의해 접수되어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전달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주문을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본 약관 또는 회사와의 매매 및 중개거래 관련 약정 등을 위반한 경우
2. 고객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의 거래시스템을 접근하거나 이용한 경우
3. 네트워크, 통신 및 전산 시스템 및 설비 또는 거래시스템 또는 이들과 연관된 소프트웨어 등의 일부 혹은 전반적인 고장, 중단, 지연 등의 경우
4.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변경,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회사가 DMA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고객의 DMA 주문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5. 고객의 주문이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고객은 제1항에 따른 DMA주문이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체결되기 전까지 전화 또는, 이메일, 메신저 등 전자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주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객은 회사가 귀책사유 없이 시간차 등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시장을 통해 기체결된 거래의 경우 주문취소요청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지한다.

제4조(서비스의 범위 등)

① 본 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DMA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기타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고객의 주문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접수 및 거래소에 전달함으로써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서비스
2. 고객의 전자적 주문을 거래소에서 체결될 수 있는 성질의 주문형태로 변환해주는 서비스 (FIX주문형태를 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 등)
3. 알고리즘매매주문의 접수 및 거래소 전송
4. 주문한도 확인 등 모니터링 서비스
5. 주문의 접수, 전송 및 체결현황을 고객의 주문관리시스템에 전달해주는 서비스

② 본 DMA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식거래 관련 DMA서비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상의 매매거래시간 중
2. 파생상품거래 관련 DMA서비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상의 거래시간 및 글로벌거래시간 중

③ 회사는 DMA 서비스를 등록한 계좌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부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1. 본조 제2항의 DMA서비스 이용시간 외의 시간 중에는 DMA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됨
2. 코스피200에 대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의 최종거래일에 장종료 1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 사이에 고객이 프로그램매매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DMA서비스 이용을 제한 (즉, KOSPI 200 선물옵션 최종거래일 종가 단일가 시간대의 프로그램호가의 제출을 금지)

제5조(수수료) 본 약관에 따른 DMA서비스 이용료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6조(고객의 의무)

① DMA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된 통신라인 등을 설치 및 유지해야 하며, 컴퓨터 바이러스, 웜 또는 기타 유해한 코드의 감염 등 DMA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회사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고객은 회사가 DMA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별첨에서 정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③ 고객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를 위해 또는 법원, 거래소,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관련 감독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회사가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를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④ 고객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반하는 행위, 매매 또는 결제시스템 접속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DMA 등의 특성을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악용하는 행위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DMA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고객은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증권거래 또는 선물·옵션거래를 위한 목적으로만 DMA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며, DMA와 관련된 회사 혹은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고객은 고객 내부의 DMA 주문, 결제 권한의 유지 및 관리, 시스템 접속 ID 등 고객의 관리 하에 있는 관련 정보 및 기술 보안에 대해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진다.

⑦ 고객의 주문은 고객 본인의 투자 판단 및 계산에 의한 것이며, 고객 본인의 시장판단 및 주문 관련 착오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고객본인에게 귀속된다.

⑧ 고객이 회사 또는 제3자가 제공하거나 고객이 보유한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DMA 주문을 내는 경우 고객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DMA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② 회사는 DMA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주문한도)

① 회사는 고객의 주문이 내부적으로 설정하여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한 주문한도 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주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 전산상의 오류, 고객의 신용리스크 변동 등 필요한 경우 고객 주문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주문)

① 고객이 DMA주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주문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한다.

② 고객은 DMA주문을 전송하기 전 제1항에 따라 입력한 정보 등 주문의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③ 고객의 주문이 제8조 제1항의 주문한도를 초과하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주문에 개입하여 이를 거부,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을 시스템 등을 통하여 즉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고객이 실행한 주문이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제출되고 거래가 체결되면, 해당 거래내역은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보된다.

제10조(서비스의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DMA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고객이 계좌 폐쇄를 요청하는 경우
2. 고객의 비밀번호 등 비밀사항이 타인에게 유출된 경우
3. 고객의 계좌에 대하여 사고신고 또는 사고등록이 된 경우
4. 고객이 해킹 등 고의로 통신장애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고객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고객이 이 약관 등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7. 기타 법률적 문제, 전산상의 오류나 다른 사유 등으로 DMA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DMA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거래내용의 확인 등)

① 회사는 고객이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고객은 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요청한다.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번지 서울파이낸스센터 29층 **메릴린치 인터내셔날 엘엘씨 증권 서울지점** (우편번호 04520) 업무부 부서장에게 우편으로 요청하거나, 또는 dg.operations_kr_all@baml.com로 전자우편을 통해 요청.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를 통하여 문의 (822-3707-0471)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용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12조(장애발생 시 처리) 회사는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해당 사실을 가능한 신속히 고객에게 통보해야 하며, 정상적인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제13조(고객정보 변경사항 통지)

① 고객은 고객의 주소 등 고객정보사항이 변동된 경우 즉시 회사에 정보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고객 또는 회사가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이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본 약관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 계약기간 중 발생한 고객 및 회사의 의무와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

제15조(각 거래상대방의 책임)

① 회사는 사기, 의도적인 위법 행위 및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 손해(간접적, 결과적인 손해는 제외)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6.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전자금융거래법」등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⑤ 고객은 (i) DMA 서비스의 사용; (ii) 사용자의 동 약정상 의무나 직무 위반; (iii) 사용자나 사용자의 청산 브로커 또는 보관인의 과실이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의 시스템을 통한 거래의 결제 실패; 또는 (iv) (선물 및 옵션 계약의 경우) 회사가 요청한 시점 및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증거금 예탁 미이행 등을 이유로 회사에 발생하거나 주장될 수 있는 모든 손실, 책임, 의무, 손해, 벌칙, 판결, 청구, 조치조항, 비용, 또는 기타 지불(합리적 법률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해 면책하며 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동의한다.

제16조(비밀유지) 고객과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되는 계약 상대방의 경영 및 전산정보 등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대리인(회사가 사용하는 전자장비, 시스템 또는 플랫폼을 제공하는자 및 운영자를 포함한다)에게 업무상 공개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양도금지) 고객은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에서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고객이 요구할 경우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본 약관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관련 법령 등의 준용)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법령 및 규정과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한다.

②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및 DMA서비스 약관(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공하는 DMA서비스 관련 일반약관을 말한다)과 본 약관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DMA 서비스에 관하여는 본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5조의 "<별첨>에서 정하는"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DMA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 등 이용료는 없음. 다만, 고객과의 협의를 통한 위탁수수료율 결정시 감안하여 결정

2. 제6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정보는 다음과 같다.

고객의 DMA주문임을 회사가 식별할 수 있는 판단자료 (FIX Provider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자료), 일일주문한도, 주문실수 등 발생시 연락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이메일주소 등 연락처

3. 기타 특약사항